

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-156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9월 29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김영기

1. 수정이유

- 파주읍 연풍리 소재 평화의원 기부채납건 등 4건의 취득·처분건중 장단콩 축제장 조성부지 취득건의 경우, 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축제장 설치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·지구지정 등 관련법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,
- 농업역사관 건물 양여와 관련된 처분건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거사에서 먼저 기부채납한 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확실하게 무상양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서의 기부채납은 바람직하지 못함

2. 주요골자

-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평화의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건과 파주시혼합사료 출자지분 주권에 대한 처분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,
장단콩축제장 부지 취득건과 농업역사관 건물 처분건은 부동의하고자 함.

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

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4건에 대한 취득·처분건중
장단콩축제장 부지 취득건과 농업역사관 건물 처분건은 부동의 한다.